

## 교류 ·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 내 불교동아리 설치 및 지원 등의 학생 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①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각 호 분야에 서로 협력한다.

1. 불교동아리 설치
2. 불교동아리 지원
3. 그 밖의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

②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대학 발전기금으로 매년 10,000,000원을 3년간 지원하기로 한다.

**제3조(비밀유지)**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취득한 상대 기관의 기밀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양 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내용 중,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한다.

**제4조(협의 조정)**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5조(협약기간)**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협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협약을 해지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재협약 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협약이행에 따른 세부사항) 본 협약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각 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) 본 협약은 협약기간 중이라도 기관 운영상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에게 3개월 전에 통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추가 및 변경) ① 본 협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협약내용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② 본 협약서 제2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별도의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이행 및 해석)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7월 25일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 
GANGNEUNG-WONJU NATIONAL UNIVERSITY

총장 박 덕 영



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

五臺山 淨土

월정사대학생전법단장  
해량